#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 10. 17 복지건설위원회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2016-62 호

○ 제 안 자 : 장상기의원 대표발의 외 10명 의원

○ 제안일자 : 2016년 10월 4일

○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2일

○ 상정일자 :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10월 17일) 심사

## 2.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존중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종합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보호 및 지속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 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1

- 다.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마.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 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필요시 편성

○ 합 의:사회복지과

○ 입법예고 : 2016. 10. 5 ~ 10. 12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외된 발달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안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 안 제3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을 의무화하였고,
- 안 제6조 및 제7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복지단체의 보호 육성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발달장애인들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본 조례안과 관련 상위법 등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의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과 관련 단체의 육성과 협력체계 구축, 사업예산 지원 등 조문 구성 상 주요내용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어 조례의 입법형식과 내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현재 서울시 타 자치구 중 관악구, 노원구 등 10개 구가 이미 조례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 전체장애인 중7.7%인 2,164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구 거주 발달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권리보장이 지역사회에 구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검토가 요구됨.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1) 관계 법령 1부.

2) 참고자료 1부.

# 관계법령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 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고라한 사람
  -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 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 발달장애인 조례제정 현황(자치구별)

조례명	구별 현황	비고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강남, 관악, 구로, 노원, 동대문, 동작, 서대문, 성북, 영등포, 중랑 (총10개구)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6.01.07.제정)

## □ 강서구 발달장애인 등급별 현황 (2016.09.30.)

	합계	1급	2급	3급
강서구	2,164명	658명	725명	781명
노원구	2,347명	821명	737명	789명
서울시	30,055명	9,100명	9,880명	11,075명

# □ 강서구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현황 (2016.09.30.기준)

지역구	장애유형	대상자수	비고	
	지적장애	1,886	71.1.7. 71.11. 71.01.01.4	
강서	자폐장애	278	강서구 전체 장애인수 28,060명 중 7.71%	
	합계	2,164	20,000 & 7.7170	
	지적장애	2,047	. 0.7 7.4.7.0.0.4	
노원	자폐장애	300	노원구 전체장애인수 27,441명 중 8.55%	
	합계	2,347	27,441 0 0.55/0	
	지적장애	25,100		
서울	자폐장애	4,955	서울시 전체장애인수 391,517명 중 7.67%	
	합계	30,055	331,317 6 6 7.0770	

# □ **강서구 장애인현황** - 28,060명(2016.09.30.기준)

장애유형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체	13,284	513	963	1,794	2,517	3,549	3,948
시각	2,796	515	85	131	140	204	1,721
청각	3,137	75	611	492	718	769	472
언어	217	2	12	78	125	0	0
지적	1,886	525	623	738	0	0	0
뇌병변	2,989	656	707	681	350	291	304
자폐성	278	133	102	43	0	0	0
정신	1,586	49	421	1,116	0	0	0
신장	1,171	93	832	0	10	236	0
심장	86	0	14	63	0	9	0
호흡기	183	25	56	101	0	1	0
간	127	2	7	11	3	104	0
안면	37	2	5	12	18	0	0
장루.요루	158	0	1	11	97	49	0
뇌전증	125	3	5	22	77	18	0

#### □ 강서구 발달장애인 복지단체

- **복지단체명** 사)함께가는 강서 장애인 부모회
- 사무실주소 강서구 금낭화로 23길 25(방화6단지 상가301호)
- **회원 현황 -** 회원 총 400여명, 정난모(회장), 이은자(前회장, 現서울본부 부대표)
- **지원 현황 -** 복지단체 지원금 : 연 280만원(구비 100%)

# □ 강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및 예산 현황 (총계:1,557명, 5,913백만원)

사업명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예산			
장애인활동 지원	○ 지원대상 : 만6세~만64세 장애인복지법상 1,2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 인자, 단,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 서비스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기본급여(등급별 월 41~101만원), 추가급여 (생활환경에 따라 월 86천원~2,341천원)	○ 대상자수 : 486명 ○ 지원예산 : 4,722백만원 (국비50:시비37.5:구비12.5)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장애인복지법상 1급, 2급, 3급 장애아동),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단,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 서비스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연 480시간 범위 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가능)/ 월 80시간 이내 원칙	○ 대상자수 : 26명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단,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 서비스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언어, 미술, 음악, 행동놀이, 심리운동, 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월14만원~22만원 지원	○ 대상자수 : 733명 ○ 지원예산 : 1,070백만원 (국비50:시비50)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성인포함)의 부모,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단,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 서비스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 상담을 6개월 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일부 회기는 부부 상담으로 진행 가능, 대상자 1인당 6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함. 월 4회 바우처 생성, 월 20만원지원	○ 대상자수 : 1명 ○ 지원예산 : 2백만원 (국비50:시비50)			
멘토링사업	○ 지원대상 : 관내 등록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1:1멘토-멘티 매칭, 체험프로그램 및 소통의 날 운영	<ul><li>○ 대상자수 : 250명</li><li>○ 지원예산 : 15백만원(구비)</li></ul>			
꿈과희망 잡(JOB)기	○ 지원대상 : 만18세이상 40세미만 관내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개인별 교육지도 계획 수립, 자기관리 훈련과 대인관계 훈련실시, 직업체험 직접 만든 물건을 지역 내 각종행사나 축제에 참가하여 판매하기), 장애인희망교실(체육활동, 간단한 요리 및 가사활동 체험 동아리 활동, 가족참여교실 등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교육	○ 대상자수 : 30명 ○ 지원예산 : 70백만원(구비)			
직업훈련	○ 지원대상 : 고교 재학생 이상 관내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제과, 제빵, 바리스타 등 직업재활훈련	○ 대상자수 : 31명 ○ 지원예산 : 34백만원(구비)			

7